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12.

발의자 : 신동근 · 김해영 · 이종걸
이철희 · 김철민 · 기동민
민홍철 · 윤일규 · 이동섭
김현권 · 서영교 · 변재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있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한 종합 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,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등)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

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학교교육 등과의 연계)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예방 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) ①</p> <p>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· 8. (생 략)</p> <p>② ~ ⑨ (생 략)</p>	<p>제14조(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</u></p> <p><u>8. · 9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</p> <p>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·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</u></p>

<p><u>7. (생 략)</u>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<u>보호 대책</u> <u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8조의4(학교교육 등과의 연계)</u></p>
	<p><u>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예방 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
	<p>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
	<p><u>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